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16.2.3.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, 2016.8.4.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,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(안 제6조제1항)
-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(안 제8조) 등

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.
 - 제1조 ~ 제3조 조례 목적, 정의,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의 책무
 -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(신설)
 -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(신설)
 - 제6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, 시행 등(신설)
 - 제7조 의견제출(신설)
 - 제8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
 - 제9조 ~ 제21조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자문대상, 운영세칙 등
 - 제22조 ~ 제28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
 - 제29조 ~ 제34조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
- 개정 조례안은 제정된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 다만 조례 내용 중에서
 - 제2조(정의) 제2항에서 “지방공공기관”을 정의하면서 “나”목에서 ‘충청북도 내에 있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’이라고 규정하였음. 이는 지리적으로 충청북도 관내에 위치한 국가 공공기관도 지방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음.
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에서 “성별을 고려하여” 구성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여성위원 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제27조(전담부서의 설치 등) 제1항에 “문화체육관광국 산하”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향후 행정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고, 전담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광역 시도도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